

1. 개정이유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6. 10.) 등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21. 3. 29., 일반음식점, 사망1, 부상2)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기존 사고는 이용객의 부주의(음주 등)로 추락하였으나, 최근 추락 사고는 발코니의 노후·부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추락사고가 발생함. 이에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구 발코니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주의 정기점검 항목에서 발코니 점검부분을 세분화함.

* '06년 이후 비상구 추락사고 8건, 사상자 16명(사망 3, 부상 13)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 설치기준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안전관리 우수 업소 표지의 규격 및 재질 개선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대책 추진

1) 비상구 발코니의 설치기준에 “활하중*이 5kN/m^2 이상”을 추가(안 별표2)

*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바닥이나 지붕위에 적재되는 이동 가능한 하중으로 사람, 가구 등의 무게

2) 피난시 유효한 발코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첨부(안 제11조

제1항제4호, 안 별지 제6호 서식)

3) 별지 제10호 서식 2. 점검사항 중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시 발코니형

비상구의 경우 어떤부분을 점검해야하는지 보다 상세하게 규정

* 비상구 발코니의 구조변형, 금속표면 부식·균열, 용접부·접합부 손상 등 확인

나.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규격, 문의 재질 등 설치기준 정비 (별표2)

- 비상구 및 주된 출입구 설치기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방화구획이

- 아닌 장소의 주된 출입구 문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및 재질 등 개선(별표 4)
- 시대흐름에 맞게 디자인을 새롭게하고, 영문혼용으로 개선
- 라. 별지 제9호 서식의 완비증명서 재발급 유의사항 수정
- “실내장식물의 변경”의 경우에는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
- * (현행) 안전시설등·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이 변경된 경우에 재발급을 불허하고 있음.
- (개정) 안전시설등·영업장 내부구조가 변경된 경우에 재발급을 불허하고, 실내장식물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 가능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난시 유효한 발코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계산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후단 중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을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으로 하고, 같은 호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난시 유효한 발코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계산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별지 제6호서식 기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구조변형, 금속표면 부식·균열, 용접부·접합부 손상 등 확인(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제9조 관련)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 확산소화기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2) 간이스프링클러설 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 동화재탐지설비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 피난설비	
1) 영 별표 1의2 제1 호다목1)에 따른 피 난기구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발코니 또는 부속실)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피난유도선	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

	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4) 휴대용 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비상구(주된 출입구를 포함) 등	가. 비상구 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장의 일부를 축소하여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의 거리를 늘릴 수 없다. 2) 설치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문틀을 제외한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3) 구조 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 감염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산후조리원의 방풍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시」에 따른 방풍구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할 것. 4) 문 가)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나)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

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2)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 (3)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 다) 주된 출입구의 문이 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나.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건물 외부로 피난하도록 설치하는 비상구의 기준

-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활하중이 5kN/m^2 이상,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상구 규격으로 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다.
-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영업장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를 경유하여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 2) 비상구의 문은 가목4)나)에 따른 재질로 설치할 것
- 3)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의 기준

-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

	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상구 규격으로 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다.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4. 창문	가.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영상음향차단장치	가.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

	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6.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비고

1. “방화문(防火門)”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관련)



1. 제작 : 2종(금색, 은색) 중 1종을 선택
 - 가. 바탕 : 금색(테두리:검정색/적색)
 - 나. 바탕 : 은색(테두리:검정색/청색)
2.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3. 재질 : 스테인레스(금색 또는 은색)
4. 글씨체
 - 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고도B 21/85밀리리터(검정색)
 - 나. 조항 : KoPubWorld돋움체 6.7(검정색)
 - 다. 조항영문 : KoPubWorld바탕체 6.3(검정색)
 - 라. 발급일자 : DIN Medium 14밀리미터(검정색)
 - 마. 시행령(영문포함) : KoPubWorld바탕체 4.5(검정색)
 - 바. 기 관 명 : KoPubWorld돋움체 10밀리미터(검정색)
 - 사. 기관영문 :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 기관영문 표기는 국립소방연구원 사업보고서 「소방청 조직 등 영문 표기 표
준화 연구」를 준용할 것
5. 이미지(엠블럼)
 - 가. 표장 : 119 형상화 18밀리미터(검정색)
 - 나. 안전시설등·교육·정기점검 : KoPubWorld돋움체 3.5밀리미터(검정색)
 -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영문포함) :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 라. 소방호스 : 85밀리미터(적색/회색 또는 청색/회색)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 ----- ----- ----- ----- ----- ----- ----- ----- ---- 제4호 ----- -----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u>피난시 유효한 발코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계산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u>
4.·5. (생략)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